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이명희 의원 외 12명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이명희 · 김근한 · 김낙관 · 김원섭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미경
정지원 의원(13명)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위원회 신설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사업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 개정 (안 제6조)

-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나. 실태조사 개정 (안 제7조)

- 실태조사 연도 명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

다. 처우개선 등 사업 추가 (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제4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신설
- 안 제8조제1항제6호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신설

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안 제9조~15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신설

마.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포상 (안 제16조)

- 현행사업 명문화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를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처우개선, 권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역량강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제9조를 제17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 부시장, 사회복지국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구미시의원

나.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

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

라.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 과장으로 한다.

⑤ 그 외 조례상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 -----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u>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u>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2. (생략)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
련 사업

<신설>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신설>

----- 처우개선, 권
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
----- 추진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역량강화-----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
리옹호 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
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

<신 설>

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 부시장, 사회복지국
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가. 구미시의원

나.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중
사자

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

라.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에
서 추천하는 사람

마.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신 설>

서 추천하는 사람

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그 외 조례상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u><신 설></u> <u>제9조</u> (생 략)	<u>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u> <u>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u> <u>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u> <u>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u> <u>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16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u> <u>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u> <u>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u> <u>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구미</u> <u>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u> <u>수 있다.</u> <u>제17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 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처우개선 등 사업 추가(안 제8조)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1.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처우개선 위원회 수당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70천원 × 11명 × 1회 = 770천원
 - 산출근거 : 70,000원(수당), 위촉위원 최대 11명으로 산정,
회의 연1회 예정
- 안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추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이춘우(054-480-5102)